

중동전쟁 관련 물가 · 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

2026. 7. 24.

관 계 부 처 합 동

중동전쟁 관련 물가·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

- **終戰 MOU** 체결(6.17) 이후 중동정세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, 최근 긴장이 재확대되며 **국제유가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**
- ⇒ 그간 **물가·공급망 대응경과**를 점검하고, 그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**향후 추진과제** 논의

1. 중동전쟁 이후 동향 및 대응체계 가동

- **(국제유가)** 중동전쟁 발발(2.27) 이후 국제유가·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며 석유류를 중심으로 국내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
 - * 두바이유 및 국제경유가격은 러우전쟁 영향이 있었던 '22년보다 높은 수준까지 상승
 - ↳ 월평균 국제유가(\$/B): <두바이유>(22.6)113.3 (**26.3**)128.5 <국제경유>(22.6)176.8 (**26.3**)195.5
- **(공급망·원자재)**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며 공급망 전반에 충격 발생
 - * 원유나프타, 나프타 파생 기초유분 등 수급불안 → 비닐 포장재, 주사기, 아스팔트 등 수급우려로 확산
- ⇒ **법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(3.25~, 주3회(대통령·총리·부총리))하여 총력 대응**



2. 그간 대응경과

① 석유가격 안정 및 원자재 등 수급불안 대응

- **(석유류)** **최고가가격제*** 도입(3.13~) + 유류세 인하 확대(3.27~, 휘△122원, 경△145원/ℓ)
 - * 석유제품 최고가격(휘/경, 공급가기준): (1차)1,724/1,713 (2~6차)1,934/1,923 (7차)1,784/1,773
 - 공급부족 방지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 실시(3.13~)
- ※ **최고가가격제는 중동전쟁 기간중(3~6월) 평균 소비자물가 △0.7%p 완화, 미시행시 평균 물가상승률 3.5% 추정(3~6월 실제 평균물가 2.8%)**
 - * **최고가가격제 물가 완화 효과/미시행시 물가 추정%p, %**: (3월)0.6/2.8 (4월)1.2/3.8 (5월)0.6/3.7 (6월)0.4/3.6

【 참고: 최고가격제 및 석유제품 가격 동향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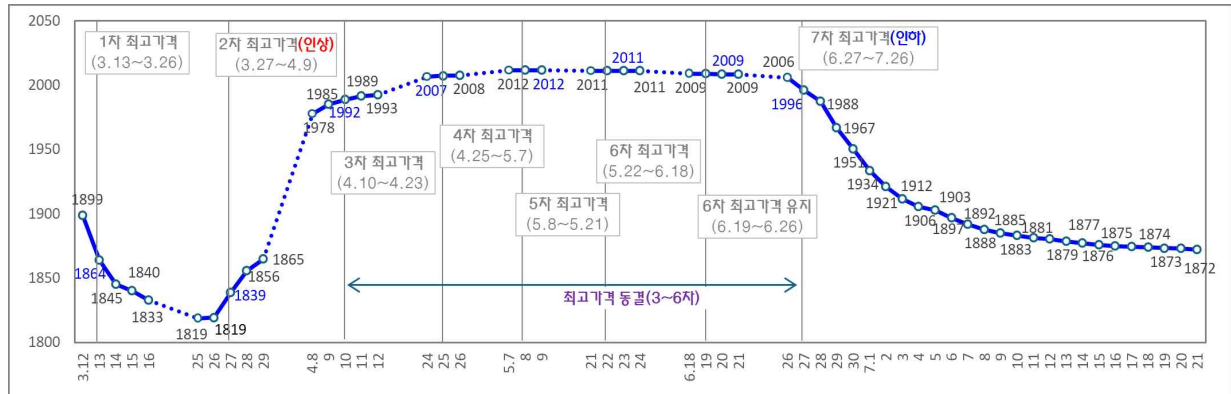
○ 7차 최고가격* 인하(6.27~) 이후 국내 유가 지속 하락세

* 6차 대비 150원/ℓ 인하 → 휘 1,784원/ℓ, 경 1,773원/ℓ, 등 1,380원/ℓ

- 7.22일 기준 휘발유 가격 1,871.7원/ℓ, 경유 가격 1,856.4원/ℓ

→ 7차 최고가 인하 前(6.26) 대비 휘발유 △134.1원/ℓ, 경유 △140.3원/ℓ

<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휘발유 가격 추이(원/리터) >



② 시장교란 및 불공정행위 엄단

- 민생물가 TF(2.11~, 총 13회)를 가동하여 불공정행위 등에 총력 대응
 - 바가지 요금근절, 전분당·밀가루·제지·돼지고기 업계 담합 등 민생물가 관련 시장교란행위 적발 및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
- * (예) 전분·전분당 담합 참여 4개 제조사 대상으로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7,476억원 부과

③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징후 품목 신속 대응

- 23개 민생밀접 특별관리품목을 우선 선정(3.12), 이후 특별관리 43개* 품목으로 대상 확대(4.9)하여 가격·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
 - * 중동전쟁특별관리품목(29개) + 민생밀접특별관리품목(14개)
- 민생물가 TF 內 「중동전쟁 물가대응팀」을 신설(4.7)하여 집중관리
- 수급·가격 급변동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일일점검 실시(3.30~)

④ 「공급망 구조개선 방안」(5.28) 및 「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」(6.26) 마련

- **(공급망 구조개선)** 공급망 불안 반복 → ❶국내생산 촉진, ❷비축, ❸해외생산능력 구축, ❹수입다변화 추진을 통한 근본적 개선 모색
- **(물가 안정)** 1조원 규모 재정투입, 세제지원 등을 통해 석유류,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→ 하반기 물가상승률 3% 이내 관리 추진
- * 역대최대 농축수산물 할인(7~8월중, 3,500억원), 신선란 2억개 추가수입, 7월중 특사단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 직수입, 중앙공공요금 하반기 동결, LPG-LNG 할당관세율 인하 등

☞ 上記 정책노력을 통해 중동전쟁 이후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 달성

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, 3~6월 평균): (韓)2.8 (유로존)2.9 (美)3.7 (OECD)4.3<3~5월>

※ "정부 정책대응으로 에너지 가격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"(OECD 한국경제보고서, 6.2)

- 다만, 상방압력 지속되며 최근 물가 상승세 확대(2개월 연속 3% 상회)

☞ 민생물가 안정대책(6.26)의 신속 집행을 통해 하반기 물가 3% 이내 관리 총력 + 중동전쟁 계기 물가·공급망 제도개선 필요과제 추진

3. 향후 추진과제

1] 최고가격제·유류세 등 적정 운영 및 손실보전 추진

① **(최고가격)**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 및 수급 동향, 민생부담 등을 감안하여 8차 최고가격 결정(7.25일 00시 시행)

② **(유류세)** 국민부담 등 감안 유류세 인하는 현행 수준에서 2개월 연장(~9.30)

* 현행 유류세 인하(~26.7월): (휘발유)△15%(△122원/ℓ) (경유)△25%(△145원/ℓ), (LPG부탄)△25%(△51원/ℓ)

③ **(손실보전)**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마련(6.30) 및 최고액 정산위원회 가동

- 도입원가 기반으로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

▶ 정유사별로 분기별(1차 기간은 3~6월) 자료를 60일 이내(1차는 8월까지)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 → 정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산액 산정 및 지급 추진

▶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석유제품을 생산·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*가 기준

* 원유 도입비용, 생산·판매비용, 기타 관련비용 등 포함

2] 품목별 맞춤형 공급망 구조개선

※ (문제점) 경제안보품목 중 일부 중요품목의 경우 여전히 특정국 의존도 高

- 적극적 투자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미흡 + 공급망 통합관리체계 부재
→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등 공급망 구조개선 추진('26.下)

① **(국내생산·비축)** 세제지원·보조금 등을 연계하여 국내생산을 지원* 하고, 산업·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 및 비축물량 확대**

*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,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보조금 지원 등

** 원유, 나프타, 비료용 요소 등 비축품목물량 확대 검토, 차량용요소 등에 신규 비축모델 시범도입 등

② **(해외생산·수입다변화)**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해외생산 기반 구축 지원, 수입선 다변화 등 추진

* 해외공급망투자 확대, 국부펀드 등 활용, 대체수입시 비용증가분 전액 저리대출 지원 등

③ **(위기대응)** 사전징후 포착, 신속한 정보 공유, 범부처 유기적 대응 등을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

③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

- ① **(할인지원)** 7~8월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, 참여업체도 확대(농축산물 온·오프라인 업체 75개 → 90개, 8월~)
- ② **(공급확대)**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*(7~8월),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 직수입 후 저가 방출 등 공급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
* 수입 신선란 주당 약 2천만개 공급: (7.4주) 1,734만개 → (7.5주) 1,995만개 → (8.1주) 2,282만개
- ③ **(여름철 대응)** 관계기관 합동 「폭염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」(수시) 등을 통해 폭염·폭우 등 피해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신속 대응
* 냉각조끼,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장비 지원 + 긴급급수, 고온스트레스 완화제, 냉방장치 지원 등 축산피해 최소화 + 생육상황 점검, 영양제 살포 및 병해충 방제지원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 등
- ④ **(추석 민생안정)** 국민체감 물가안정, 부담경감 등 추가 방안들을 포함하여 9월중 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 마련

④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

※ (문제점) 매점매석금지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시 제재 및 이행강제 수단 미흡*

* 매점매석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은 가능하나, 판매강제 및 경제적 제재 불가

→ 물가안정법 개정('26.下)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

- 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+ 긴급공급 필요시 압수물품을 매각*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
*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
- 부당이득 박탈을 위해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+ 신고포상금 신설
* (예)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, 이익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

⑤ 할당관세 점검강화 및 제도개선

- **(점검강화)** 할당관세*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반기 돼지·닭고기, 고등어, 식품원료 합동점검 실시(7월~)
* 돼지·닭고기 긴급 할당관세(5.29~), 하반기 할당관세 신규 9품목, 연장 13품목(7.1~)
- 7월중 닭고기 할당관세 유통점검(7.9, 7.21~22, 가공업체, 대형·소형 외식업체, 수입유통업체 등), 고등어 반출·유통실태 점검*(7.14) 실시
* 기한내 반출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 취소, 1년간 추천대상에서 배제 등 조치
- **(제도개선)** 「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」(2.26) 후속조치 지속
* 관세법 개정(신고지연가산세 강화, 반출명령 등), 전담기구 지정, 수입추천관리시스템 구축 등 연내완료 추진